

# 교원업적평가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본 대학' 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전임교원(이하 '교원'이라 한다)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.

② 전임교원이라 함은 조교수, 부교수, 교수를 말한다.

③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업적평가의 원칙) 교원의 업적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한다.

## 제 2 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

제4조(평가대상기간 및 시기) ①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1일에서 당해연도 11월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.

② 평가 시기는 매년 12월로 연1회 평가한다.

제5조(업적평가기구) 교원업적의 평가를 위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'평가위원회'이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평가위원회 구성)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행정부총장, 정책부총장,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교수 3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으로 한다.

제7조(교원업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) ① 본 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평가 대상기간의 업적을 매해년도 11월30일까지 학교정보화시스템에 입력 및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평가절차) ① 주무부서는 개별 교원의 업적을 수합·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상정된 교원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며, 주무부서는 개별 교원의 업적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총장은 평가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주무부서는 업적평가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교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

제9조(이의신청 및 처리) ① 교원은 정량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와 재심청구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학교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한 것은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. 단, 제출서류에 대한 미비 등 심사

대상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청구가 불가하다.

② 평가위원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며, 주무부서는 그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재심을 청구한 교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평가영역 및 기준

**제10조(평가영역)**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영역평가와 원(스쿨)영역평가로 구분한다.

① 개인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.

② 원(스쿨)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.

③ 삭제

**제11조(평가비율)** ① 평가비율은 개인영역 65%, 원(스쿨)영역 35%로 한다.(2018.6.1.개정)

② 부총장 및 처·실장은 개인영역 60%, 소속기관 및 대학전체 정량평가부분 40%로 평가한다.  
(2018.6.1.개정)

**제12조(개인영역평가)** ① 개인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한다.

② 공통지표는 교육활동평가,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 등으로 평가한다.

③ 정성지표 설정을 위해 교수는 자기발전계획서를 매년 1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정성지표 설정은 평가대상 교수에 따라 해당 스쿨 원장 또는 학과장, 본부부서장, 부총장과의 상호 조율을 통해 결정한다.

⑤ 정성지표 평가는 개인 업적결과를 기준으로 위원회와 원장 또는 학과장, 본부부서장, 부총장, 총장이 각각 결과중심으로 평가한다.

**제13조(원(스쿨)영역평가)** ① 원(스쿨)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한다.

② 공통지표는 재학생충원율, 산학지수, 입학지수, 만족도지수 등으로 평가한다. (2017.6.1. 개정)

③ 원(스쿨)의 정성평가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신년사업계획 발표와 연중 실시되는 원(스쿨)사업평가 워크숍 발표시에 평가한다. (2018.6.1.개정)

④ (삭제)

⑤ (삭제)

**제13조의2(전공영역평가) 삭제**

**제14조(가점 평가) 삭제**

**제14조의2(평가조정)** 영역별 결과값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보간법을 이용하여 평가값을 조정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조정여부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업적평가 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평가대상자에게 개인 별 조정 전 원점수와 조정 후 점수를 모두 공개한다. 결과값이 구간값 사이일 경우 구간값을 보간법을 이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.

**제15조(세부평가기준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별 세부평가기준(별첨1)은 별도로 정하며, 기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업적평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기 타

**제16조(비밀유지)** 본 평가에 참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누설을 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**제17조(보칙)**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③ 삭제

**제18조(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은 재적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

**제19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전임교원의 인사 및 보수산정의 기초자료, 우수교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(경과 조치) 2017학년도 산학연구학기제 대상자(1학기 3월 1일부터 2학기 개강전 까지, 2학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는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---

2018학년도  
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

---

2018. 6.

교무처

## 2018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

### 1. 세부평가기준의 방향성

- 누구나 이해가 가는 세부 평가 기준을 만든다.
- 대학의 목표가 명확한 지표를 목표 기준으로 제시하고, 그 달성을 독려하도록 한다.
- 대학의 목표 지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부총장, 처실장 그룹도 대학전체의 정량지표로 평가 하여, 구성원 전체의 달성을 함께 독려하는 의미를 부여한다.
- 정성평가의 결과가 명확화 객관화 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 제도를 보완한다.

### 2. 주요 항목과 그 의미 및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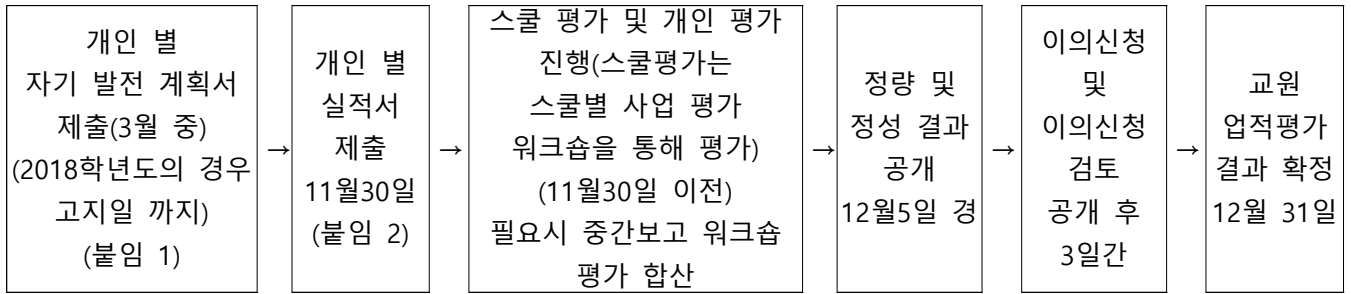
구분	항목	의미 및 목표
스쿨 공통	재학생 충원율	대외 지표경쟁력 확보 / 안정적 등록금 재원 확보
	산학지수 (취업률, 유지 취업률, 현장실습 이수율)	대외 지표경쟁력 확보
	입학지수 (등록률, 순환률, 수시모집예치금 등록률, 추가모집 등록자 수)	외부 경쟁력 확보 / 안정적 신입생 확보 독려 / 지원자 관리 독려
	재학생 만족도	재학생 만족도 관리 독려
	교원업적평가 위원회 스쿨 평가	전년 사업 실적 및 신년 사업 계획 워크숍을 통한 평가
	총장님 평가	
개인	교육활동	수업평가
	연구 및 산학	대학 발전에 기여, 전공 역량 함양
	원장 정성 평가	업무 접점이 큰 스쿨 리더의 평가 확대, 정성 평가 시스템에 기술(주관식)후 피 평가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객관성 확보 노력
	총장 평가	







#### 4. 평가 방법



4-1. 평가 세부 사항에 규정되지 않았거나, 인정/불인정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함

#### 5. 정량 - 평가 세부 사항

##### 1) 스쿨 - 공통지표

분류	평가항목	세부구분	평가방법
K (조직 가치)	재학생 충원율	재학생 충원율	-기준일: 해당연도 4/1일자(배점*67%), 10/1일자(배점*33%), 학기별 산정 후 합산 . 4/1 목표: 최근 공시시준 수도권 경쟁 대학 10등 기준 재학률 (2018학년도 목표 97.5% 적용) .10/1 목표: 최근 3개년 2학기 우리대학전체 재학생 충원율 + 5% (2018학년도 목표 92.24%) / 과거3년 지표(86.37, 87.72, 87.64) -계산식: 스쿨별 재학률 / 대학 목표 * 배점 (최대값은 배점)
		재학생 충원율 가점	-대학 목표지표 이상인 경우 적용 (학기별 산정, 비율은 학기별 재학생 충원율 배점 비율과 동일) -계산식 : (스쿨별 재학률 - 대학전체 목표) (최대값은 배점)

분류	평가항목	세부구분	평가방법
K (조직 가치)	입학 지수	등록률이 100% 미만인 경우 감점처리	-대상: 2018학년도 -감점 = 입학지수 전체 배점 * ((100% - 신입생 등록률(%)) * 20) (등록률은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)
		순환률 (외부 경쟁력 측면)	-대상: 수시, 정시(2018학년도) -계산식: 수시1순환율*(수시1모집정원/스쿨정원) +수시2순환율*(수시2모집정원/스쿨정원) +정시순환율*(정시모집정원/스쿨정원) - p<=200(배점 만점)/ 200<p<=400(배점 만점*1/2)/ p>400(배점 만점*1/3)
		수시모집예치금 등록률 (수시 관리적 측면)	-대상: 2018학년도 -배점 - (배점 * 미 등록률)
		추가모집 등록자 수 (정시 관리적 측면)	-대상: 2018학년도 -배점 - (배점 * 추가모집 수/정시정원)

분류	평가항목	세부구분	평가방법
K (조직 가치)	산학 지수	졸업생 취업률 (공시자료 기준)	-대학 목표값: 수도권 경쟁대학 평균(최근 공시기준) -기준일: 평가 대상 학년도 공시자료 (2018. 12. 31.(공시자료)) -2018학년도 대상학생: 2017.2월 + 2016.8월 졸업자 -비고: 2018학년도 배점제외(사유: 2017학년도 교원 업적평가 시 적용된 지표임)
		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	-대학 목표값: 수도권 경쟁대학 평균 (최근 공시기준)(2018학년도 69.6%) -기준일: 2018. 12. 30. 스쿨별 보고 자료 기준 -2018학년도 대상학생: 2018.2월 + 2017.8월 졸업자 -계산식 :(스쿨별 자체 취업률(건보, 개인창작자)+국세DB 자료)/ 대학목표*배점(최대값은 배점만점) -방법 : 9/30, 11/30 스쿨별 현황 보고 -비고 : 2019학년도 평가시 공시(2019.12.31.) 자료와 스쿨 자체 보고 자료 차이 발생 시 해당 % 만큼 감함 2017학년도 평가 시 적용지표 기준 차이 수치 감점 적용
		유지 취업률	-대학 목표값: 수도권 경쟁대학 평균(최근 공시기준) (2018학년도 목표 69.1%(4차 유지 취업률 기준)) -기준일: 평가 대상 학년도 공시자료 (2018.12.31.(공시자료)) -2018학년도 대상학생: 2017.2 + 2016.8월 졸업자 -계산식: 스쿨별 유지 취업률/ 대학 목표 * 배점 (최대값은 배점)
		현장 실습 이수율	-대학 목표 값: 수도권 경쟁대학 평균(최근 공시기준) (2018학년도 목표 20.7%) -기준일: 2017.12.01.~2018.12.31. -기준 데이터: 스쿨별 현장실습 이수 현황 -계산식: 스쿨별 현장실습 이수율 / 대학목표*배점 (최대값은 배점) -비고: 2018학년도 동계 현장 실습은 수강신청 인원으로 산정 2019학년도 평가 기준일은 2019. 01.01.~2019.12.31. 함 단, 유아교육과의 현장실습 인정여부는 정부 현장실습반영기준을 확인 후 반영여부 추후 결정
		취업률 가점	-취업률이 대학 목표지표 이상인 경우 -계산식 : (스쿨별 취업률 - 대학전체 목표) (최대값은 배점)
		참고 사항	-2019학년도의 경우 산학지수 배점은 [졸업생 취업률] 과 [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]의 배점 비율을 5:5로 분할하여 배점 예정함

분류	평가항목	세부구분	평가방법
K (조직 가치)	만족도 지수	재학생 만족도	-만족도 결과(5.0 만점 환산) * 2

2) 개인 - 공통지표

분류	평가항목	세부구분	평가방법
K (조직 가치)	교육활동	수업평가	<p>가. 계산식: 수업평가점수*20점 ( 배점 기준으로 환산)</p> <p>나. 수업평가점수: 평가학년도 1학기 와 평가 직전 학년도 2학기의 평균</p> <p>다. 기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별 수업 중 15인 이하 강의 및 공동 운영 과목은 조정가능 (교원업적평가 주무부서에서 의견수렴, 단, 조정 시 개인별 또는 전체공지)</li> <li>- 감점평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 주당수업시수가 기준시수대비 부족: 부족시수*5점(최대 20점까지 감점) (단,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 프로젝트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기준시수 및 기준 일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교원업적평가 주무 부서를 통해 내부결재를 득한 것에 한해 기준 시수 및 기준일수를 충족 한 것으로 인정) (단 스쿨의 예외사항 인정서에 의한 것은 인정범위에서 제외함)(긴급한 보직 발령, 폐강 만 인정)</li> </ul> </li> </ul>

분류	평가항목	세부구분	평가방법
K (조직 가치)	연구 및 산학업적	연구 및 산학업적 공통	<p>가. 모든 산학 연구업적은 사전에 신고되고, 업적물에 대학의 이름이 병기된 경우만 인정함. 부득이 할 경우 업적평가 완료기간 1개월 전에(10월31일까지) 교원 업적평가 주무 부서에 사전 신고(외부 노출 계획 포함)하고, 계획한 방법으로 대학명과 함께 외부 공개한 경우 인정함</p>
		연구업적	<p>◆ 개인(공동)연구 업적물</p> <p>가. 학술논문: 100점/참가자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등재지 및 후보지, 임용 후 학위취득 논문: 100점</li> <li>- 학술대회, 공인학회, 협회 및 정부기관 발간 논문: 50점</li> <li>- 유관기관, 협회, 학회, 재단 등 공적 단체 주관 세미나 주제 발표: 20점</li> <li>- SCI(E)급: 연구 및 산학업적 배점 만점(참여자 수 무관)</li> </ul> <p>나. 저서: 100점/저자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부 출간 시 ISBN 필수</li> <li>- 번역서의 경우 배점 50% 인정</li> <li>- 동영상 강의 등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한 학기 분량, 저서수준 이상, 교육 및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한 경우도 인정하나, 위원회 평가를 통해 차등 점수를 부여함</li> <li>- 교수학습지침서(워크북): 배점 50% 인정 (단, NCS운영센터를 통해 결과가 승인된 경우에 한함, 또한 위원회 평가를 통해 차등 점수를 부여함)</li> </ul> <p>다. 공동업적의 경우 연구자수로 나누며, 5인 이상 시 5인 간주, 책임자 1.2배</p> <p>라. 기타 개인 연구 업적의 범위는 교원업적평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, 인정 산출 방법은 타 개인연구 산출 방법과 동일함(1건(작품) 당 최대 100점, 공동참여 경우 산출 방법 등 동일)</p>

분류	평가항목	세부구분	평가방법
			<p>마. 모든 개인 연구업적은 업적물에 대학의 이름이 병기된 경우만 인정하며, 부득이 할 경우 업적평가 완료기간 4개월 전에 교원 업적평가 주무 부서에 사전 신고(별도 외부 노출 계획 포함)하고, 계획한 방법으로 대학명과 함께 외부 공개한 경우 인정한다.</p>
		산학업적	<p>◆ 대학 전체 발전을 위한 연구 업적물 및 재정지원 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및 산학업적 배점기준 만점을 부여함</li> <li>- 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결과물 (예)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보고서, 기관평가인증 보고서 등)</li> <li>- 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 (예) 특성화보고서, 링크보고서 등)</li> <li>- 대학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 등</li> <li>- 대학 전체를 대표 혹은 발전을 위한 보고서의 범위는 교원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정함</li> <li>- 평가 방법 (소관 부서의 장이 참여도 상/중/하로 평가하여 상-배점 만점, 중-배점*2/3, 하-배점/2) 단, 그 결과 및 결과물의 수준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감점 할 수 있음</li> </ul> <p>가. 스쿨 및 부서 차원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: 세부 배점 지침/참여자 수 (탈락 시 50% 인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학협력단에 사전 신고 되어 인정된 것에 한함</li> <li>- 책임및참여는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실제 참여 인원으로 함(책임의 경우 1.5배 적용)</li> <li>- 세부 배점 지침 (3억 이상= 연구및산학업적 배점 만점, 3억 미만~1억= 100점, 1억 미만~5000만원= 70점, 5000만원 미만~1000만원= 50점, 1000만원 미만= 20점) 단, 스쿨이나 부서 발전을 위해 외부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경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함</li> </ul> <p>나. 개인 차원 교외 용역 연구 업적물: 환산연구비 100만원 당 10점/연구자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학협력단에 사전 신고된 교외 용역 연구에 한함</li> <li>- 환산연구비=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인건비*0.1 + 기관간접비*0.7 + 기타경비(재료비포함)*0.3 + (학생장학금 혹은 학생인건비)*1</li> <li>- 수주연구비는 평가기간 내에 학교에 입금된 현금액으로 평가하며, 평가기간 내 종료된 연구에 한해 인정. 연구가 종료되었으나 최종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연구자의 선택에 따라 차년도 평가에 이를 반영가능</li> </ul> <p>다. 교내 연구업적물: 100점/연구자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내 연구 관련 주무부서를 통해 계획 및 결과가 승인된 교내연구과제에 한함</li> </ul> <p>라. 특허등록: 100점/연구자수(발명자 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재산권: 30점/연구자수</li> <li>- 학교명의 출원인 경우 위원회 논의 후 가점할 수 있음</li> </ul> <p>마. 개인 및 공동 전시회: 100점/참가자수</p>

분류	평가항목	세부구분	평가방법
			<p>바. 공모전 수상: 대상 100점/참가자수, 입상 50점/참가자수</p> <p>사. 공연 및 콘텐츠제작관련 업적물: 100점/참여자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적물의 결과가 뛰어날 경우 위원회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배점 만점 부여가능</li> <li>- 공연 및 콘텐츠제작 관련 업적시 분야별 감독급은 참여자수와 관계없이 총괄감독은 100점, 분야별 감독은 50점으로 함</li> <li>- 연기자의 경우 주연급은 100점, 조연급은 50점으로 함</li> <li>- 이 외의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</li> </ul> <p>아. 산업체연수: 1일 1점/ 최대 30점까지 인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전 신고된 산업체 연수에 한함</li> <li>- 7일 이상시 인정함</li> <li>- 사전 신고 시 허가된 경우 '토요일, 일요일'도 인정함</li> <li>- 지원을 받아 진행한 전공 심화과정 연수는 미인정 함</li> </ul> <p>자. 교수창업: 환산매출액 100만원당 10점(교내 절차에 의해 설립한 경우에 한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산매출액= 간접비*0.7 + (학생장학금 혹은 학생인건비)*1</li> </ul> <p>차. 캡스톤디자인: 20점(책임교원에 한함)</p> <p>카. 산업체자문실적: 자문료 100만원당 10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학협력단에 사전 신고된 자문에 한함</li> <li>- 자문비=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인건비*0.1 + 기관간접비*0.7 + 기타경비(재료비 포함)*0.3 + (학생장학금 혹은 학생인건비)*1</li> <li>- 수주비는 평가기간 내에 학교에 입금된 현금액으로 평가하며, 평가기간 내 종료된 연구에 한해 인정. 연구가 종료되었으나 최종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연구자의 선택에 따라 차년도 평가에 이를 반영 가능</li> </ul> <p>타. 공동업적의 경우 연구자수로 나누며, 5인 이상시 5인 간주, 책임자 1.2배</p> <p>파. 학내 행사 주관의 경우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산학업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음. 인정의 범위 및 점수 산정은 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정함</p>

## 6. 정성 - 평가 세부 사항

분류	평가항목	세부구분	평가방법												
K (조직 가치)	스쿨	위원회 평가	<p>가. 평가대상: 각 스쿨 단위</p> <p>나. 정량 평가방법: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정성평가 (위원 본인 소속 스쿨은 평가 하지 않음, 위원 개별 평가를 아래 표 기준으로 평가 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하위</th> <th>중간</th> <th>상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스쿨 수 분포</td> <td>2개 스쿨</td> <td>4개 스쿨</td> <td>2개 스쿨</td> </tr> <tr> <td>취득점수</td> <td>0~배점/2</td> <td>배점/2 ~ 배점*2/3</td> <td>배점*2/3 ~ 배점 만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 불임 3 서술식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스쿨에게 위원별 작성하여 피드백 하여야 함</p>	구분	하위	중간	상위	스쿨 수 분포	2개 스쿨	4개 스쿨	2개 스쿨	취득점수	0~배점/2	배점/2 ~ 배점*2/3	배점*2/3 ~ 배점 만점
		구분	하위	중간	상위										
	스쿨 수 분포	2개 스쿨	4개 스쿨	2개 스쿨											
취득점수	0~배점/2	배점/2 ~ 배점*2/3	배점*2/3 ~ 배점 만점												
총장평가	<p>가. 평가대상: 각 스쿨 단위</p> <p>나. 평가방법: 배점기준 0점에서 만점 사이 점수 부여</p>														
	개인	원장평가	<p>가. 평가대상: 평가 대상 각 개인</p> <p>나. 정량 평가방법: 아래 구분에 의한 인원 수 조정 평가 혹은 전체평균이 배점*80%로 조정하여 평가 중 평가 방법 선택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하위</th> <th>중간</th> <th>상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인원 수 분포</td> <td>25%</td> <td>50%</td> <td>2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다. 불임 4 혹은 불임 5(산학협력 중점 교수의 경우)의 서술식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에게 작성하여 피드백 하여야 함</p>	구분	하위	중간	상위	인원 수 분포	25%	50%	25%				
구분	하위	중간	상위												
인원 수 분포	25%	50%	25%												
		본부 부서장 평가 /부총장 평가 /총장평가	<p>가. 평가대상: 평가 대상 각 개인</p> <p>나. 평가방법: 배점기준 0점에서 만점 사이 점수 부여</p>												

## 7. 평가 기타 사항

- 본부소속 센터장 혹은 처실장인 자가 산학협력 중점교원인 경우 평가는 보직 기준으로 평가 한다.
- 본부소속교원(센터장, 관장), 처실장, 부총장의 정량 평가는 대학전체 정량 목표기준 대비 대학 전체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.
- 스쿨소속센터장, 전담직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스쿨소속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  
단, 전담직교원은 연구 및 산학업적에 대한 결과가 없을 경우 교육활동을 개인공통지표 전체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리케이온센터 소속 교원의 원장평가는 리케이온 센터장이 평가하며, 리케이온 소속 교원의 자율지표는 교원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그 경중 및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.  
(사전 제출된 개인별 자기 발전계획서 상 자율지표 비교 검토)
- 휴직자에 대한 평가는 일반평가자와 동일하게 평가(수업 미 실시 시 수업평가 0점)한다.  
단, 평가점수가 650점 이하일 경우 650점으로 보정한다.

- 업적평가 기간 중 보직변경에 따른 평가방법은 기존보직평가와 일반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.
- 의무 현장실습 혹은 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운 전공은 현장실습 이수율을 취업률에 배점하여 적용한다.



## 8. 붙임

### 붙임 1. 개인별 자기발전계획서

제출일:

스쿨명:

전공명:

제출자:

(서명)

**붙임 2. 개인별 실적**

*\* 리케이온 소속 교원의 경우 객관적 자율 목표 지표를 포함하여 작성*

제출일:

스쿨명:

전공명:

제출자:

(서명)

**붙임 3. 스쿨 정성평가 의견서(교원업적평가 위원 작성)**

우수한 점	
<p>* 개조식, 구체적으로 기술 최소 3개 이상 기술</p>	
발전시켜야 하는 점	
<p>* 개조식, 구체적으로 기술 최소 3개 이상 기술</p>	

제출일:

평가대상 스쿨명:

제출자:

(서명)

**붙임 4. 개인 정성평가 의견서(스쿨 원장 작성)**

올해 스쿨(담당부서)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	
<p>* 개조식, 구체적으로 기술 최소 3개 이상 기술</p>	
내년에 스쿨(담당부서)의 발전을 위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	
<p>* 개조식, 구체적으로 기술 최소 3개 이상 기술</p>	

제출일:

평가대상자 성명:

제출자:

(서명)

**붙임 5. 산학중점 교수용 개인 정성평가 의견서(스쿨 원장 작성)**

올해 스쿨(담당부서)의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부분  
(취업, 창업, 산학협력, 현장실습(글로벌포함), 링크+사업참여, 산학프로젝트 등)

\* 개조식, 구체적으로 기술  
최소 3개 이상 기술

내년에 스쿨(담당부서)의 산학협력 발전을 위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  
(취업, 창업, 산학협력, 현장실습(글로벌포함), 링크+사업참여, 산학프로젝트 등)

\* 개조식, 구체적으로 기술  
최소 3개 이상 기술

제출일:

평가대상자 성명:

제출자:

(서명)